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사이트: 모든 센터

병원 정책 및 절차 매뉴얼

번호: C190

페이지 1 / 6

제목: 추심 정책 (COLLECTION POLICY)

정책 및 목적:

추심 정책(정책)의 목적은 환자가 NewYork-Presbyterian Hospital(병원)에 대한 불량 채무를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정책은 병원 그리고 병원의 자선 진료 정책 (Charity Care Policy) (이하 자선 진료 정책)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고 병원의 핵심 미션, 가치 및 원칙에 맞게 채권 추심 활동을 맡고 있는 대행 기관 및 변호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본 정책은 병원과 미결제 환자 채무 계정의 추심을 위해 병원을 돕고 있는 대행 기관, 변호사 및 법무 법인에 적용됩니다.

절차:

A. 일반 지침

1. 병원, 추심 대행 기관(대행 기관) 및 변호사와 법무 법인(외부 법률 고문)은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공정한 채권 청구에 관한 법률(Fair Credit Billing Act), 소비자 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s), 연방 보건법(Public Health Law) 2807-k-9-a항, 조세법(Internal Revenue Service Code) 501(r), 뉴욕 민사소송법(New York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제52조 및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등을 포함하나 이제 제한하지 않고 채무 추심에 관한 해당하는 모든 연방 및 주 법률과 공인 대행기관 요건을 준수합니다. 병원, 대행 기관 및 외부 법률 고문은 또한 병원의 자선 진료 정책도 준수합니다. 병원의 추심 정책과 자선 진료 정책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자선 진료 정책이 우선하며 기준이 됩니다.
2. 병원은 진료에 관련된 개인의 채무를 위탁하는 일체의 당사자(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 포함)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이 자선 진료의 대상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료에 대한 지불을 받기 위해 특별 추심 조치(Extraordinary Collection Action, ECA)가 취해지지 않도록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 병원과 허가된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추심 방법: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사이트: 모든 센터

병원 정책 및 절차 매뉴얼

번호: C190

페이지 2 / 6

1. 특별 추심 조치(ECA)는 조세법 501(r)항에 규정된 대로 병원 시설의 재정 지원 정책에 보장된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지불 받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에 대해 병원 시설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본 추심 정책의 요구 사항에 맞게 병원은 다음과 같은 ECA만 착수할 수 있습니다.
 - a. 민사 소송 제기,
 - b.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 c. 은행 계좌나 다른 개인 재산의 압류 또는 압수
 - d. 급여 압류
 - e. 소환장 발급.
2. 병원, 대행 기관 및 외부 법률 고문은 환자가 자선 진료에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환자의 병원 진료 청구서에 대해 재정 책임을 수용했거나 수용해야 하는 환자나 다른 개인에게 ECA를 착수할 수 없습니다.
3. 병원, 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은 제3자 정보에 근거하여 또는 사전 자선 진료 적격성 결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적합성을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제공된 일체의 진료에 대하여, 개인이 자선 진료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병원 및 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은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제공한 것 이외의 정보에 근거하여 또는 사전 자선 진료 적격성 판단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격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선 진료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대 지원 이하로 지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정하여 판단한 경우, 병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a. 추정 자선 진료 적격성 판단의 기준과 자선 진료 정책에 따라 이용 가능한 더 후한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b. 진료에 대해 환자에게 지불 의무가 있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ECA를 개시하기 전에 개인에게 더 후한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합당한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c. 만일 개인이 자선 진료 정책에 따라 제공된 신청 기간 동안에 더 후한 지원을 구하는 자선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병원, 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은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더 후한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에 관해 적절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4. ECA에 착수하기 전에 병원은 개인에게 통보 기간 동안에 자선 진료 정책에 대해 알리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통보 기간은 환자에 대한 병원의 변제 후 청구 명세서 날짜로부터 120일까지입니다. 그러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 개인이 자선 진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병원, 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은 해당하는 경우에 본 정책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ECA(절차 A1 참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은 본 정책에 의해 허가된 ECA를 수행하기 최소 3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사이트: 모든 센터

병원 정책 및 절차 매뉴얼

번호: C190

페이지 3 / 6

- a. 개인에게 서면 통보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개인은 자선 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병원 또는 기타 허가된 당사자가 진료비 지불을 받기 위해 착수하려는 ECA를 밝히고, 그러한 ECA가 개시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나타냅니다. 그 최종 기한은 서면 통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 b. 위의 B4a 항에 나오는 통보와 함께 자선 진료 요약서(요약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 c. 최초 청구 후 개인과 병원 사이에 전화 통신을 통하여 자선 진료 정책에 대해, 그리고 자선 진료 신청 절차에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개인에게 통보하는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d. 개인이 불완전한 자선 진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개인에게 연락처 정보를 비롯하여 자선 진료 신청 완료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정보 및/또는 문서를 안내하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 e. 개인이 자선 진료 정책에 따라 완료한 자선 진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선 진료 적격성을 판단하고 문서화합니다.
5. 일체의 ECA를 착수하기 전에, 병원, 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은 해당하는 경우 Medicare 및 Medicaid, 기타 지불 재원과 자선 진료와 같은 보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의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6. 병원, 대행 기관 및 외부 법률 고문은 청구 및 추심 과정 동안에 언제든지 자선 진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이 ECA가 개시되기 전이나 개시된 후에 불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병원, 대행 기관 및 외부 법률 고문은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개인이 자선 진료에 자격이 있는지 판단될 때까지 그리고 본 정책 및 자선 진료 정책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때까지 그러한 ECA를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
7. 개인이 신청 기간 동안에(즉, 청구 및 추심 주기 동안에 언제든지) 완전한 자선 진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병원, 대행 기관 및 외부 법률 고문은 개인이 자선 진료의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다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본 추심 정책에 따라 진료비 지불을 받기 위한 ECA를 일시 정지합니다.
 - b. 개인이 자선 진료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개인에게 이 적격성 판단(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적정 자격을 가진 지원 포함)과 병원의 결정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사이트: 모든 센터

병원 정책 및 절차 매뉴얼

번호: C190

페이지 4 / 6

- c. 만일 병원, 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이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무료 진료 이외의 자선 진료에 자격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병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 (i) 개인에게 개인이 진료비로 지불해야 할 금액과 그 금액이 결정된 방법을 명시하고 개인이 진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amounts generally billed, AGB)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기술 또는 설명하는 청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ii) 개인이 진료에 대해(병원에게든, 병원이 개인의 진료 채무를 위탁한 제3자에게든) 지불한 금액 중 \$5.00(또는 공지나 적절한 국제청 고시에 공개된 기타 지침에 따라 설정된 기타 금액) 이상일 경우 개인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 (iii) 진료에 대한 지불 금액을 받기 위해 개인에게 취한 일체의 ECA 조치를 되돌리기 위한 모든 이용 가능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a) 개인에 대한 관정을 무효화합니다. (b) 일체의 담보권이나 압수를 해제합니다(병원이 진료를 제공한 신체 상해의 결과로서 재판, 중재 또는 화해의 결과로 개인(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지불되는 것에 대해 주 법률에 따라 병원이 주장할 자격을 가진 것 이외에). (c) 개인의 신용 보고서에서 소비자 보고 기관이나 신용 기관에 보고되었던 부정적인 정보를 제거합니다.
8. 대행 기관 및 외부 법률 고문은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미결제 잔액의 금액이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경우(적절한 병원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환자 계정과 관련된 모든 추심 활동을 일시 정지합니다. 환자 계정은 병원이 추심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일시 정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은 파산 통보를 받은 개인에 대해 추심 활동을 추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9. 대행 기관 또는 외부 법률 고문은 병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소환장을 발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떠한 종류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C. 금지된 추심 방법. 병원, 추심 대행 기관 및 외부 법률 고문은:

1. 미결제 부채를 지불하기 위해 개인의 주 거주지 매각이나 압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2. 병원에 제출된 완전한 자선 진료 신청서(일체의 증빙 서류 포함)가 결정 심리 중인 동안 추심 대행 기관에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사이트: 모든 센터

병원 정책 및 절차 매뉴얼

번호: C190

페이지 5 / 6

3. 서비스가 진행된 시점에 Medicaid에 자격을 가진 사람 및 Medicaid 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추심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이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Medicaid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개인의 채무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습니다.
5. 신용 기관에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선 진료 정책에 따라 자선 진료에 대한 추정 적격성에 관해 신용 기관에 질의할 수는 있습니다.

D. 판정 후 행위. 외부 법률 고문:

1. 사례별로 판정 평가를 실시합니다.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대충 훑어 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서도 안됩니다.
2. 개인의 체포를 유발하거나 개인이 신체 구속 영장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3.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5년 후 판정을 소추하지 않습니다.
4.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판정일부터 5년 후 개인에 대한 판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5. 병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에 대한 판정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6. 병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인의 계정을 또 다른 추심 대행 기관이나 법무 법인에 이관하지 않습니다.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변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그리고 병원의 서면 승인을 받은 즉시, 대행 기관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위해 외부 법률 고문에 적절한 청구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적절한 청구는 합계액 최소 \$800 또는 병원이 외부 법률 고문에 위탁하기 위해 때때로 서면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다른 더 높은 한도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서 위탁은 일반적으로 대행 기관이 청구를 받은 후 6개월까지는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7. 해당 법률, 본 추심 정책 및 병원의 자선 진료 정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기관에 금지 통고 없이 정보 청구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a. 은행;
 - b. 근무처;
 - c. 신용 카드 회사 및/또는
 - d. 대출 회사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사이트: 모든 센터

병원 정책 및 절차 매뉴얼

번호: C190

페이지 6 / 6

8. 본 추심 정책과 자선 진료 정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유예된 세금이나 동등한 퇴직 연금 저축 계좌를 제외하고 개인의 은행 계좌에 대해 재산 강제 집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외부 법률 고문과 접촉하여 호소하고 재산 강제 집행의 결과로서 재정적인 곤궁의 합당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외부 법률 고문은 강제 집행 과정을 중단하고 병원의 담보권을 해제해야 합니다.
9. 본 추심 정책과 자선 진료 정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뉴욕주 법률을 준수하여 개인의 급여에 대해 최대 10%까지 개인에 대한 소득 강제 집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법률 고문은 개인의 배우자에 대한 소득 강제 집행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 환자 재정 서비스

정책 날짜:

발급일: 2015년 10월

심사일: 2017년 8월

승인: 신탁 이사회